

합수반은 작년 2월1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검찰에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21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500여건의 비리 관련자 1천750여명을 수사한 결과 금품제공자 168명, 전·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 등 327명을 적발했다.

합수반은 이중 재벌기업 계열 J사 대표 김종선(60)씨 등 159명을 구속 기소,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 등 15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송재환 전 병무 청장 등 17명을 수배하는 한편 병역을 불법 면제받은 160명에 대해 재 신검후 현역입영 조치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합수반은 작년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넘겨받은 75명의 정치인 자체증 공소시효가 지난 44명을 제외한 31명과 별건 적발된 1명 등 32명의 병역 비리 의혹을 조사했으나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의 아들 외에는 대부분 금품수수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자체 20여명에 대해 재 신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최초판정 직후 수술을 받았거나 재검결과가 병역면제 당시와 동일하게 나와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승구 본부장은 "병역비리 수사가 착수 되기전 전국적으로 연평균 7.58%에 달했던 신체결함에 따른 병역면제 비율이 작년에는 3.1%로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그러나 합수반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수긍되지 않는 부분도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참여연대의 반론을 들어보자.

① 1년간의 수사 활동을 마감하고 13일 해체된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의 병역비리 수사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되고만 데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사의 전 과정을 지켜본 결과 우리는 이번 수사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인 등 고위직 병역비리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법행위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병역비리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② 지난해 2월14일 검찰과 군은 '총선용 편파수사'라는 일부의 거센 반발을 일축하고 검, 군 20명의 수사진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을 구성,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현직 의원 54명과 고위층 인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관련자 1천750여명을 수사해 병역면제 등과 관련한 금품제공자 168명, 전·현직 병무청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 전·현직 판정 군의관 25명 등 32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인은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 한 명에 그쳐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대한 깊은 국민적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③ 특히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뤄진 이번 수사팀의 수사가 당초수사의 핵심이었던 정치인 등에 대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위한 면죄부 병역비리 수사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이를 수사에 대한 역사적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④ 그나마도 미진하게 진행 중이었던 여야 의원 4~5명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해체해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물론 검찰이 정치인 수사는 합수반이 해체돼도 서울지검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⑤ 특히 참여연대가 논평 등을 통해 수차례 밝힌바 있듯이 면책특권을 약속받고 수사에 협조했던 군의관들에 의해 밝혀진 기무사 관련 병무비

리는 200여건으로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에 손을 대지도 않았다.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병역사항은 군 사정 기관의 특별관리대상이어서 이들의 묵인 혹은 관여 없이는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가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병역비리 수사의 몸통을 비껴난 가지치기에 머무른 수사였다.

⑥ 특히 이러한 병폐가 현 검찰이나 군 사정당국의 구조에 의해서는 공정하게 수사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혀졌다. 군 고위직 장성들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군 검찰제도 내에서는 기무사의 개입과 고위직 장성들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이 정치인 수사에서 독립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밝혀진 만큼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⑦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듯 사회지도층의 병무비리는 50년간 만성화되고 고질화된 군사회의 병폐이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이의 근본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병폐다. 고위직 병역비리를 뿐만 아니라 위해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범법행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cyber Pspd 2001.2.13

그러면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그들의 아들들은 얼마나 병역의무를 마쳤는지 살펴보자.

15대 의원 및 아들/20대 재벌2세 병역면제율(조선일보, 1997.8.18)

국회의원 (288명)	25.3%(73명)
----------------	------------

의원아들 (239명)	15.5%(37명)
재벌2세 (21명)	52.4%(11명)
일반국민 (병역대상)	8.2%

이들 외에도 정부 장·차관급, 저명교수·변호사·의사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병역면제율은 일반국민 면제율 8.2%보다 높을 것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볼 때 대단히 불평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많은 비리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兵役特例者가 되기 위해서도 각종 탈·불법이 동원되고 있다.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의 형태는 ①실역복무자(현역, 상근예비역), ②전환복무자(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 의용소방원), ③대체복무자(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로 대별 되는데 대체적으로 현역을 기피하고 여건에 따라 나머지 형태의 근무를 선호하며 현역을 제외한 이들을 兵役特例者라 부른다. 병역특례자중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다.

전문연구요원은 병무청장이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원에 의하여 편입할 수 있다.

①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다음과 같은 사람중에서 원에 의하여 편입할 수 있다.

- ①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
- ②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③ 군공창 또는 군정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④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⑤ 후계 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⑥ 기술자격소지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은 5년간, 산업기능요원은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며,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탈·불법행위는 유령지정업체와 알선업체·알선학원의 취업사기행위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병무청 승인 없이 다른 곳 파견근무

- ② 병역특례자가 임원겸직
- ③ 벤처창업자가 다른 기업 병역특례자로 취업
- ④ 자격증 없는 병역특례자 채용
- ⑤ 알선업체 및 학원의 취업부정
- ⑥ 가짜 병역특례업체의 특례자채용
- ⑦ 병역특례자 근무시간 및 임금차별 대우
- ⑧ 법정 최저임금 이하 지급
- ⑨ 친인척 특례업체에 취업

이와 같은 탈·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수용인원보다도 희망자가 많은데 기인되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입영 소요가 제한된 것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입영대상 및 소요인원 현황(병무청 통계)

년도	1997	1998	1999	2000
입영대상	40만6천	45만2천	46만2천	46만4천
소요인원	29만	29만	29만	29만

3. 구조적 문제 : 병역제도

(가) 병역의무 개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헌법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지게되어 있으며, 그 의무는 18세에 발생하여 40세에 종료되기까지 국가가 부과하는 병역에 복무하여야 한다. (전시에는 45세까지 연장)

만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19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20세 이후에 역종별로 일정기간 병역의무를 마친 다음 예비군 또는 전시근무소집 복

무를 하고 40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되며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③ 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나)신체검사

신체검사는 만19세의 남자나 20세 이상으로서 신체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 받는다. 거주지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국의 216개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병역판정에 참조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결과 등위는 1-7급으로 나뉘며 1-4급은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전시 소집대상),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질병치료후 재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신체검사 결과 5,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다 공정한 판정을 받기 위해 정병관, 정병검사의, 시민단체 관계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자로 구성된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전원이 동의할 때 확정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 재검을 받아야 한다. 신장 및 체중에 따른 면제는 1999년부터 폐지되었다.

(다)병역처분 및 복무기간

신체검사에서 1-4급을 받은 사람은 학력, 연령, 자질 등을 심의하여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분류된다.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거나 학력이 고퇴 또는 중졸인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일반적 병역처분 기준 / 복무기간

등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 상근예비역 (26-30개월)				제 2 국 민 역	병 역 면 제	재 검 사 대 상
고졸							
고퇴 · 중졸	공익근무요원(28-36개월)						
중퇴이하		전시소집대상					

복무기간에 있어 육군 및 해병대는 26개월, 해군은 28개월, 공군은 30개월간 각각 복무한다.

현역입영 대상자 가운데 예비군 중대 운영, 군부대 무기고 관리 등을 위해 해당 지역별로 상근 예비역을 선발한다. 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라 94년 신설된 상근 예비역은 군부대에서 6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뒤 방위병처럼 출퇴근 근무한다. 훈련기간이 포함된 총 복무기간은 26개월이다.

공익근무요원(보충역)은 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라 94년 상근 예비역과 함께 신설됐으며,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으로 나뉜다.

행정관서 요원은 4주간 훈련을 받은 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훈련기간 포함 28개월간 근무한다. 분야는 ①시설

경비 ②하천 및 산림감시 ③문화재 보호 ④과적차량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⑤병무행정 보조 ⑥의료지원 보조 ⑦장애인 재활업무 보조 등 다양하다.

국제협력봉사요원은 개도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지원과 봉사활동을 위해 선발되며 복무기간은 32개월이나 실효성이 없어 2001년부터 폐지되었다.

예술·체육요원은 올림픽 대회 3위 이상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선수교육 이수자,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내 및 국제 예술경연대회 상위권 입상자 등이 대상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에 편입시킨다.

(라) 문제점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3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므로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외에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 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응소의무, 징발법에 의한 토지·물자·시설·권리 등의 양도 의무,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인력동원·물자비축·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의무, 통합 방위법에 의한 적의침투 및 출현에 대한 신고의무 등 국방과 관련된 많은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외에도 국방 또는 군사와 관련한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용 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방어해면법, 군용전기통신법, 계엄법 등에서 의무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병역은 국방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인적부담을 말하며, 병역의무는 병역이 자의적이 아니라 국가가 의무로 강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방은 전투력을 핵심으로 한 위험배제 작용이고 전투력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요소이며 이러한 인적요소를 병역의무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투력이 아닌 인적요소를 병역(兵役, Military Manpower)으로 간주하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합

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헌법에서 뜻하는 국방의 의무를 벗어난 편법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예 : 공익근무요원의 교통위반 적발업무, 벤처기업의 연구업무 등)

따라서 현재의 병역법은 위헌적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장 모병제 주장의 정당성

1. 기회비용

징병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선택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세계정치 구도의 변화와 남북화해의 시대에서 국가경제 구성원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징병제가 과연 효율적인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첫째 징병제는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무시하고 있다. 기회비용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의 의미는 매우 크다. 병역의무에 있어서 기회비용은 군대에 가지 않고 사회에 남아 있을 경우의 고용기회와 가치창출의 기회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이러한 기회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 있다. 물론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군 입대에 따른 기회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미약한 사람은 없다. 지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비리도 이에 연유한 것이다. 즉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1천만 원을 뇌물로 바친 사람에게는 그가 군대에 입대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자신의 가치가 1천만 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그러한 거액의 액수를 지불하고서라도 군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를 면제받은 사람과의 사회생활에도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비록 봉급 생활자의 경우 호봉에 있어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대

가를 지불하지만 이것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충분히 지불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복무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취욕의 달성을 사회 전체적인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젊은이들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면 군대 기피나 병역비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징병제에서는 기회비용의 지불이 불가능하다.

둘째 강제적인 징집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다. 우리나라 군대의 인력자원 배치는 과연 어떠한가. 사회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그 재능을 썩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공병대에 배치되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회계장부 정리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유용한가? 이러한 현상은 곧 군대에서는 사회에서보다 자원의 이용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할 경우 피고용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피고용자의 능력과 전공에 맞는 적합한 곳에 피고용자를 배치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용자의 노동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비용지불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이윤획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사용자가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자원은 무의미하게 이용될 소지가 많으며 동시에 자원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명확하게 소유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기회비용 지불을 강력하게 요구받게 된다.

그러나 징병제에서의 사정은 다르다. 징집된 사람은 법에 의해서 그의 노동력의 사용과 기간, 장소결정권이 그의 재량권 밖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그의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이는 그의 기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주장마저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복무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군복무 기간을 절망감으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기회비용을 무시한 징집제도는 새로운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병제의 고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군대도 기업과 같은 경영마인드를 지닌 집단으로 변모해야 한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적절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지불함으로써만 군 인력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군대의 자유화

우리 사회를 구성한 원리가 자유주의이므로 군대의 조직을 개선하는 일에서도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끊임없이 보다 자유로운 군대로 만들려고 애써야 한다. 물론 군대는 자유화를 이루기가 여러 모로 어려운 조직이다. 그래도 차차 살펴보면 우리는 군대에도 자유화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고대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회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두 길이 있었다. 하나는 직업적 집단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징집에 의존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들은 그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그 둘을 절충한 형태를 골랐다. 오래되고 널리 퍼져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징집은 자유로운 사회의 구성 원리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관행이다.

현대의 자유로운 사회들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종사하도록 강제되는 분야는 병역뿐이다. 다른 모든 분야들은 그 분야에 자발적으로 종사하려는 시민들로 채워진다. 물론 그런 선택의 자유는 시민들의 복지를 지켜준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바라지 않는 직업에 오랫동

안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겪는 괴로움과 손실은 우리 사회의 복지를 크게 줄인다.

정집이 안은 또 하나의 문제는 정집된 병사들의 낮은 생산성이다. 군인이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들까지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은 군인이 되기를 꺼린다. 그렇게 바라지 않는 직업에 어쩔 수 없이 종사하게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발전된 군사 기술이 동원되는 현대전에서는 전문화된 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있다. 병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에서 육체적 힘은 점점 덜 중요해지고 대신 직업적 지식과 기술은 점점 중요해 진다. 여러 나라 군대들이 참가했던 걸프 전쟁은 정집되어 젊은 훈련을 받았고 직업 의식이 약한 병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는 지원병으로 이루어져 전문화된 군대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모병제는 본질적으로 군대의 운영을 시장에 맡기는 제도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직업시장에서 다른 직업들과 경쟁하도록 해서 군인들이 받아야 할 보수를 가격 기구가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병제는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아주 간명하며 정병제보다 조직하고 운영하기가 훨씬 쉽다.

물론 모병제의 도입이 작은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시도하지 못할 만큼 큰일은 아니다. 지금도 부사관들과 장교들,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들은 지원자들로 채워진다.

제다가 우리에겐 참고할 선례들도 많다. 미국은 이미 정집병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원병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복잡한 국제 정세가 요구하는 다양한 임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험을 특히 흥미롭게 하는 것은 그런 전환의 이론적 바탕을 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월남전의 후유증으로 미국 군대의 장래가 무척 어두워졌을 때, 군인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자고 맨 먼저 주장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밀튼 프

리드먼이었고 그는 그 제도를 떠받치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서 그것의 성공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이 세상엔 프로 군인 즉, 전사(戰士)가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힘든 훈련과 위험한 임무로 이름난 해병대가 어느 사회에서나 인기가 높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 다른 편에는 군대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군인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평생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군복을 걸치는 순간부터 비참해질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들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를 단숨에 크게 늘릴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는 자원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상으로 여기므로 지원병들로 이루어진 직업적 군대가 바람직하며 군인이 되는 길에서도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군대의 전문화

정병제는 국민자신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개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국민개병주의는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되는 강제성과 수동성, 그리고 소요인력을 양적으로 충족시키고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보수를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병개인이 복무하는 동안 지급되는 소액의 보수 및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경비(가시적 국방예산)로 국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군소요에 기초한 정집인력이 정집대상 인원보다 적을 경우 채택이 불가피한 부분 정집제는 현역 입영자와 기피자, 보충역, 제2국민역, 면제자를 포함한 비복무인력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키고 동시에 국가인적자원의 비효율적 운용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형평성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병제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상의 비용(가시적 국방예산)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괴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노동집약적 전력의 유지와 전력의 현대화를 지체시킬 가능성이 있다. 군복무인력이 강제로 징집되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보수를 받는 반면에 군사적 자본재는 시장가격에 의해 조달되므로 자본재보다는 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전에서는 인력위주의 전력구조보다는 현대식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력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력의 과잉투입은 방위산업 기술의 발전과 현대화를 부분적으로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에 관한 문제점이다. 민간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에 의해 채용된 인력을 각 개인의 능력(생산성)에 기초해 적소에 투입하는 반면에 군은 징집인력을 각 개인의 역량과 생산성에 기초해 투입·배치해야 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군복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 또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임무를 수행할 유인책이 없는 데에 기인한다.

한편 모병제는 고도산업사회의 분업원칙과 인간의 자발성 및 동기유발에 기초한 제도로서 국민개병주의 능동적인 발전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성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병군은 사회적 대표성이 부족하여 국가속의 또 다른 국가(state in the state)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민주사회의 형성과 안정화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중군대의 감소로 민군관계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고 군대의 본질인 공익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병역제도와 민주주의의 안정 사이에 역사적으로 뚜렷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고 또한 군의 핵심역할을 하는 장교와 하사관이 이미 직업군인

으로서 국가안보와 헌법수호에 주어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병을 모병제로 충원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강하다.

4. 긴장완화 유도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이데오로기적 경쟁체제였던 냉전시대는 종말을 맞이하였고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붕괴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으로 일시적인 국지적 분쟁은 있었으나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도발은 미국의 강력한 응징을 불러왔으며 모험으로 끝났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은 나타나기가 어려울 것이며 성공하기도 힘들 것이다.

북한도 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으로 체제유지에 급급한 형편이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불장난은 경제개발에 여념이 없는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할 것이므로 북한의 도발위협은 체제유지 또는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짙으므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햅볕정책으로 대북인식에 대한 한미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주한미군을 고리로 한 안보협력과 유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병제로 전환시 파급효과로는 군사력의 질적 향상으로 안보역량은 강화되나 외형적인 병력의 감소가 북한군 축소유도 요인으로 작용,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점이다.

2003년 9월 25일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병역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제도

임종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소장)

1. 문제의 제기
2. 징병제와 사병 인권 (군대 내의 현실)
- 병력이 너무 많다
3.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폐괴와 현역복무사병의 불이익
 - 1) 병역면제자와 현역
 - 2) 병역특례자와 현역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5. 군사주의의 확산과 한국인권의 현실
6. 맷음말

1. 문제의 제기

- 현재 한국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3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3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남성은 일정기간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한국 남성들 모두가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다.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어 정당하게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 탈법으로 군복무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또 각종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 군대 대신 산업체나 연구소에 근무하거나, 공익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수도 14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꼬박 2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제복을 입고 보내야 한다. 더욱이 현역 병들의 경우 월급여가 2만원을 조금 넘는 등 고되고 긴 복무' 여건에 대해

사실 상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가산점 논쟁이나 인기아수 유승준 씨의 미국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소동에서 보듯이 현역으로 근무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해 있다.

-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1960년대 이래로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군대는 많이 좋아졌고, 또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이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 한국 군대의 인권의 현주소
- 한국사병들의 인권상황이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현행 징병제는 단 한번도 근본적인 검토를 받지 않고 유지됨 //
- 현행 징병제 하에서 사람의 가치가 실현되기 어려움: // 사병들이 무제한 공급: 숫자가 너무 많고 너무 싸게 부려먹을 수 있음
- 인격이 무시당하는 경험: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험 / 군에서의 인권침해 체험이 사회로도 이어짐
- 고위층이나 연예인의 병역기피 문제 등으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 고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관심 고조
- 군대 내 의문사, 폭력, 성추행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인구의 증가, 사회의 민주화, 남북관계의 진전, 경제적 성장,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권리의식 성장 등에 조응하여 현행 병역제도 개선해야
- 개인개인들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병역제도를 만들어야

2. 징병제와 사병 인권 (군대 내의 인권현실)

- 인권의 관점에서 군대를 돌아 볼 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부터 1995년 5월 말까지 15년 5개월 간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우리 군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5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고 있는 셈이다. 걸프전 당시 미군 측 사망자가 전사 148명, 사고사 121명으로 모두 269명에 불과한 것에 비한다면 이같은 손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 군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1990년대 후반 들어 사망자수는 많이 줄어

들었지만 1996년 330명, 1997년 273명, 2000년 182명, 2001년 164명 등 적지 않은 수

- 군폭력: 2002년 천주교인권위 조사 (국가인권위 용역사업) // 군대 내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심각한 지경

- 자살: - 정신병: 1년 5천명 신규환자 발생 / 입원환자만 1천명선

*** 군대 내의 사병들의 열악한 인권현실은 대부분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에서 기인: 현행 징병제를 그대로 둔 채 행해지는 사병 인권 개선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사병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전혀 보장되지 않음: → 現行 징병제 문제

- 사병과 간부 사이에는 조선시대의 신분제에 못지 않은 신분 상의 격차 존재

- 병력의 과다: 모든 사병들이 장기간 영내 생활해야: 사병이 사병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상화: 장관이나 총장훈령으로 사병 상호간의 음성적 통제나 규율을 금지해도 아무런 소용없음

- 간부들의 인식: 군대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병은 오히려 군대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이다: 뺨질 뺨질한 놈들 가르치려다 오버한 것이니 관대히 처리해야 한다: 이런 애들 벌주면 누가 규율 잡아가면서 군대생활 열심히 하겠는가

- 사병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거의 공짜로 공급되는 상황: 간부들의 진급 상의 어려움 가중되는 현실에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역과 작업에 많이 동원: 사병들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감 느끼지 못하게 함

3.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파괴와 현역복무사병의 불이익

1) 형평성 파괴

- 심각한 병역비리

- 각종 병역특례제도: 14만명 // 과거 방위병이 17만

- 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에 꼬박 2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제복을 입고 보내야 한다. '신성한 병역의무'라는 말과는 달리 우리 사병들의 복무여건은 참담하다. 아무리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2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아무런 보상없이 보내야 하는 현역복무자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안고 있다.

- 현재의 징병제도는 징병 적령기의 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복무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각종 병역특례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현역복무를 면제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산업기능요원이 약 5만5천명, 전문연구요원이 약 1만5천명, 공익근무요원이 5만5천명, 공중보건의 1천여명 등으로 거의 13만에 달하며, 여기에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등을 더하면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현역이 아닌 직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 병역특례대상분야: 방위산업, 전문연구활동, 공중보건 등 극히 제한된 범위: 1991년 병역법 개정이후 공업, 에너지,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
- 산업기능요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인격, 노동권 침해 / 노조탄압의 수단 / 지정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서의 비리 가능성
- 인구감소 및 구성비율 변화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인원 감소: 정부는 대체복무요원 축소 추진
- 지나치게 긴 현역복무기간
- 바람의 아들 / 신의 아들 / 장군의 아들 / 사람의 아들 / 어둠의 자식들
- 국민개병제 아니라 빈민개병제라는 비아냥
- 군가산점 폐지 논쟁, 인기가수 유승준 파동
- 정치인 본인 및 자식들의 병역 문제가 정치쟁점화: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의 두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 아주 중요한 변수였음

2) 경제적 측면

- 군복무자 처우: 현역병에 지급되는 급료가 월 2만원선 (우리와 안보환경과 경제규모에서 유사한 대만의 사병들이 2개월간 받는 급여가 우리나라 사병들이 26개월 근무하고 받는 급여와 거의 비슷)
- 징집된 병사들에 대해 국가가 경제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 한국은 거의 완벽하게 이 의무를 방기
- 누구나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처지와 인권 상황은 '신성'이라는 말을 들이대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것이 현실이다. 월급이란 말을 쓰기 낯간지러울 정도인 2만원이란 금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병들의 인권현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병들의 월급 문제는 사병들이 피부로 느끼는 군생활의 어려움이나 불만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병 월급을 최소한 최저임

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문제는 병역제도 전반 및 군 구조개편을 촉발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 현재 한국군의 병력은 대략 69만명, 이 중 사병은 대략 3/4인 52만4천명이다. 여기에 상근예비역 3만 6천 여명을 더하여 총 56만 여명이 국방예산에서 봉급을 받고 있다. 2002년도 한국의 국방예산은 16조3천6백40억 원인데 사병들의 인건비는 1,296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에서 0.8%에 지나지 않는다. 3만 7천여명의 주한미군에게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주둔비 지원금은 약 4억\$로 5천억원 선이다. 사병과 상근예비역 56만 여명의 인건비의 4배에 가까운 거금이다.

- 사병들의 월급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사병들이 병역을 면제 받거나 각종 특례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 또는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병들은 돈으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몸으로 현물조세 형태의 병역세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면제자들, 특례자들, 그리고 다수의 대체복무자들은 현역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향유하면서 정상적인 월급까지 받는다. 1990년대 초반 국방연구원이나 육군사관학교 논문집에 실린논문들을 보면 2000년대 들어서면 징집된 사병들에 대해서도 지원병(부사관) 수준의 처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3년의 한 연구는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24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재론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휴가나오면 가족들에게 손벌려야 하고, 제대하고 복학하려면 막막하기만한 사병들에게, 최소한도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일까?

- 26개월의 복무기간에 받는 월급을 모두 모아도 병역특례자들이 사회에서 받는 한달 월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병들의 군복무는 병역특례자들과는 달리 대개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병역특례자들은 민간기업의 월급을 받으며 군복무를 대체하는데 왜 징병된 사람들은 한 달에 1만여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돈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헌법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엄청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많은 병역특례자들의 경우 해고와 동시에 현역으로 소집되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조건은 노비문서라 불릴 정도로 열악하다. 이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역이 병역특례자에 비해 받고 있는 차별과 불이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제적 징병제 하에서 많은 양심수 양산: 총 1만 여명 / 2001년 처음 문제 제기 당시 수감자 1,600여명 / 현재 900여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현재 투옥 중인 사람은 약 1,600여명이다. 현재 그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는 결코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불교신자이자 평화 운동가인 오태양 씨가 작년 말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바 있고,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없지만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 역시 오랜 기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전통을 이어 왔다.

일부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면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고 말한다. 사실 '신성한 병역의무'라는 말과는 달리 우리 사병들의 복무 여건은 참담하다. 아무리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2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아무런 보상없이 보내야 하는 현역복무자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안고 있다. 한국사병이 26개월을 복무하고 받는 '급여'를 모두 합쳐 보아야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대만의 병사들이 받는 한달치 급여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현재의 군복무제도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현재 14만이 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만일 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되어 젊은이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복무기간의 단축과 복무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주의, 군사주의를 견제하는 개인의 시민적 권리의 신장이 불가피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문제가 뒤늦게나마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현재의 병역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심판요청이 법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다수의 기독교도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단에 대한 특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는 근대국

가에서 이단 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풀어야 할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가,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현대전에서 군대의 강함은 병력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과 첨단무기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한 국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징역을 가야하는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002년 초 남부지원 박시환 부장판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

5. 군사주의의 확산과 한국인권의 현실

- 한국사회 전반에서 군사주의의 막강한 헤게모니를 대변하는 말은 “너, 군대 갔다 왔어?” 또는 “군대 갔다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이다. 물론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도 역사적으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장교를 놓고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군대는 출세를 위한 사다리였다. 가난한 농촌 청년이나 북에서 월남하여 남쪽에 이렇다할 기반을 갖지 못한 젊은이들은 군대를 통해 신분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병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 일제의 강점과 전쟁의 참화를 겪은 대다수의 농촌 청년들은 문맹이었고, 전근대적인 인습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 우선 글을 배울 수 있고, 자동차, 무기, 통신장비 등 기계문명을 비로소 접하게 된다. 단체생활을 통해서 규율과 협동, 복종을 배우고, 졸병들을 거느리면서 나름대로 통솔력과 지도력, 사람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된다. 또 1960년대 초반에는 제대 군인들에게 농사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니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 오니 그런 말이 생길 법도 했다. 그러나 이는 196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이지, 대학교육이 일반화되어 고등학교 중퇴만 되어도 군대에 가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군대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군대가 인권의 사각지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처럼 군대에서 남성들은 폭력의 희생자인 동시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 군생활에서 폭력과 군사주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고참이 되면서 - 보다 정확히 말해서 자기 밑에 신병을 받으면서부터 - 폭력의 행사자가 되어야 했던 남성들에게 폭력의 상처는 오래도록 지속된다.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정생

활에서,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군사주의가 강요한 폭력과 맹종의 악영향을 우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군대의 경험이 사회로 이어지고 확산되기 때문에 군대의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필수적

- X로 밤송이를 까라면 까야 하는, 상급자에 대한 그런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에서 말대꾸는 금물이다. 한국 남성들은 3년 가까운 군생활 동안 이런 절대복종을 몸에 익힌다. '짬밥'을 먹어가며 그들은 상급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종을 체득하고, 또 자신이 상급자가 되면서 하급자에게 이런 맹종을 강요한다. 그리고 이런 맹종의 습관은 직장으로 이어진다. 박노자 교수의 지적처럼 군대의 맹종문화가 직장생활을 지배하는 한,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상급자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거침없는 자기 권리 주장 등 자유민주 사회의 직장문화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

- 한국남성들의 군대경험은 남녀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확대재생산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온상이다. 법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만연해 있는 성적 불평등이나 다분히 폭력적인 남녀 간의 관계, 백만이 넘는다는 매춘 여성의 존재도 징병제에 기반한 한국남성들의 군경험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군생활을 통해 일상적인 물리적 폭력과 언어폭력, 인격의 파괴에 길들여진 남성들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만나서 평등하고 평화적인 인간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군대에서 몸에 밴 물리적, 정신적 폭력의 행사는 제대 이후에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약자이자 하급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폭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당하다는 것을 한번 배운 사람들로서는 약자이자 일종의 이류 시민인 아내나 아이들을 존중해 주고 평등하게 대해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6. 맷음말

- 인권의 측면에서 현행 징병제 그대로 들 수 없음

- 징병제 실시의 역사적 경험: 도입부터 잘못: 일제 말기에 병력 동원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어 도입 // 이민족 치하에서 징병제 도입되었었기에 독립 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징병제 실시됨 / 미국의 병력 총수 제한으로 도입 직후 폐지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부활: 법제화는 전쟁 이후

- 이런 과정 거치다 보니 서구의 경우 징병제 실시가 시민적 권리 확대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격 지니나, 우리의 경우 그런 성격을 찾을 수 없이

오로지 의무만 강조됨

- 세계사에서 징병제가 수립되는 과정은 곧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중세의 군주는 봉건계급의 군사적 독점을 파괴하고자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군대를 사게 되었다. 군주가 봉건적 기사들이 이끄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마련한 재원으로 용병을 사게 되는 과정은 사실상 중세를 유지해 온 정치질서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하여 국가재원이 확대되고,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군주는 상비용병군을 거쳐서 상비왕군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프랑스 혁명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국민군대가 등장하게 된다. 프랑스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국민군대를 형성한 성과는 나폴레옹의 유럽 석권으로 나타났다. 클라우제비츠가 프랑스혁명 이전 전쟁은 오로지 정부만의 관심사였지만, 혁명을 거치면서 갑자기 전쟁은 국민 전체, 즉 모두가 자신을 시민으로 여기는 3천만 국민의 일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국민들의 정치참여와 제반 권리가 보장된 프랑스가 전제정치 하에서 국민들의 전투의지는 대단히 박약한 주위의 다른 나라들에 군사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시민계급과 농민계급에게 많은 정치적 양보를 하면서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도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에서 징병제도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참정권 등 시민적 권리의 확대과정이기도 했다.
- 한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특기해야 할 일은 국가와 시민 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할 징병제도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별다른 고민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민족 지배 하의 일제 강점기에도 시행되었던 징병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민들이나 징병제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데 대해 아무도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또 징병제는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세력이 꿈꾸었던 제도이기도 했다. 더구나 시민들은 일제가 퍼뜨린 국가주의의 세뇌에서,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해온 독재국가의 '국민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 모병제가 대안인가?
- 징병제의 장점 살릴 수 없나?: 양질의 인적 자원 확보 / 국민 일반의 정서 반영 // 전제조건: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 복무기간 단축 / 사병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 / 사병 처우 현실화 (최저임금 수준: 단,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최대한 구현된다면 그 금액은 낮아질 수 있을 것)

首先想好文章的脉络，把要写的内容，整理成长句，然后
再分段，这样写起来就容易了。如果想写成短句的话，那就
可以先想好每一段的中心思想。

要写好文章，首先要了解文章的类型，根据不同的文章，要写
出不同的风格。比如新闻稿，就要简明扼要，语言要直白，不要
有太多华丽的辞藻。而像文学作品，则需要更丰富的想象力和文
字功底。在写作时，要注意文章的结构，开头要有引人入胜的故
事或数据，中间部分要展开叙述，结尾要有总结或展望。另外，
要注意文章的逻辑性，前后内容要连贯，不能出现矛盾。在写文
章时，还要注意用词的选择，尽量使用一些常见的词汇，避免使
用过于生僻的术语。同时，要注意标点符号的使用，比如逗号、句
号、感叹号等，都要正确地使用。最后，要注意文章的排版，使文
章看起来更加美观。总的来说，写好一篇文章需要多方面的训练
和积累，但只要坚持练习，相信你会越来越好的。

기사모음

[한겨례] 2003-07-08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12면 02판 2191자

왜냐면 토론 / 모병제가 대안이다 – 김강기명씨의 ‘모병제가 대안은 아니다’에 대한 반론

또다시 병역문제다. 병역문제와 관련한 담론의 지나친 생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박탈감’에 기인한다. 무엇인가를 빼앗겼다는 그 막연한 느낌은 병역 의무를 지지 않은 장애인, 여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병역 특례자들에 대한 공격거리로 변하기도 한다.

그 박탈감의 정체는 크게 네 가지라고 본다. 먼저, 한창 나이에 군대에서 시간을 때움으로써 갖게 되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박탈감, 군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반인권적 경험’에 의한 인권의 박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인격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자각은 허위이며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되는 왜소한 ‘개인’ 일 뿐이라는 소외감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박탈감이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야 한다’는 가학적 성향으로 변하여 문제의 본질을 여성에 대한 증오심, 유승준에 대한 과도한 미움, 병역 특례자에 대한 분개라는 개인 차원에서만 볼 뿐 구조적 차원에서 보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물론,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자신의 책무를 유기하는지를 관찰하여 민주주의적 가치인 공공성, 공정성이 어떻게 유린되는지를 간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군대를 통해 국민을 임의적으로 동원하고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 어떻게 국가의 가치를 설파하고 어떻게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군대는 정신교육을 통해 반공주의를 아직도 주입시켜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또한 상명하복이라는 군대 규율은 대중의 자발성을 제지하고 권력 복종을 체화시킬 뿐만 아니라 ‘까라면 까라’에 익숙해진 개인은 명령에 단순히 복종하는 인간형으로 전락해 버린다. 게다가 군대는 검열이라는 낡은 수단으로 군인 개인의 사상을 재단하고 있으며, 이런 군대의 검열·통제 문화는 개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교육시켜서 ‘국가질서 안의 인간’

을 양산하고 있다. 게다가 군복무 이후에도 동원 훈련이니, 예비군 훈련이니 하며 동원하고 관리하면서 국가는 국민을 어느새 국가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병제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시킬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김강기명씨는 7월3일치 '왜냐면' 기고문에서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그 이유를 첫째, 계층간의 갈등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둘째, 군대가 전문 집단화되고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병제가 아니라 확대된 병역·봉사 개념을 사용하여 장애인, 여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모두 봉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김강기명씨는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군대에 지원할 사람이 없게 되어 군대가 하급집단이 되고 이는 또 다른 계층 갈등을 양산한다고 말하지만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요즘, 군대 환경개선, 처우개선만으로도 군을 안정된 직장으로 볼 사람은 많다. 둘째로, 군대의 전문 집단화가 결국 군대를 국민 공동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동관심은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성의 문제에 따르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신당 창당에 관심이 많다. 이는 신당 창당을 통한 이념정당의 등장과 지역구도 타파는 현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장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국가방위의 문제와 연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강기명씨는 확대된 병역개념이 모든 이가 나라를 위해 봉사할 공정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대된 병역에는 쉬운 병역과 힘든 병역이 나눠질 것이고 지금과 같은 불법 병역 배분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제재할 장치를 또다시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전쟁무기는 고도로 발전하여 무기를 다루는 데도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며 군인의 수보다는 전문 인력의 운영이 우선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군대는 2년여 군복무 기간 뒤 병력이 계속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의 양산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언제까지 머리 수로 현대전을 치를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국가동원을 통해서 개인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만 군인의 월급(약 2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생활하게 하는 '노동력 착취 현실'에 눈감아야만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인간의 가치를 외면하며 젊은이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런 징병제를 용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동건/역사문화아카데미 회원

[한겨례] 2003-07-03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15면 01판 2084자

왜냐면 토론 / 모병제가 대안은 아니다

유승준씨,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 "꼭 가고 싶습니다"를 외치는 텔레비전 속 청년들, 그리고 돈도 없고 빡도 없어 눈물을 삼키며 훈련소 문을 들어서는 이 땅의 수많은 서민의 아들들과 그들을 비웃는 돈있고 빡있는 병역 면제자들,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여성들과 장애인들, 수많은 사정을 가지고 병역문제와 얹혀 있는 사람들 … 그들은 어찌 되었든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국' 사람들이다.

1997년의 '이회창씨 아들 병역문제' 이후로 이 문제는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왔다. 거기에는 시민권 취득과 뇌물 등을 통한 병역면제 같은 빈부갈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보혁갈등, 병역 가산점 문제와 같은 남녀갈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 등이 복잡하게 얹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병역 개혁안은 모병제인 듯하다. 전군의 직업 군인화를 통해 군대의 전문성 확보와 인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모병제는 징병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갈등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모병제로 바뀔 경우 군대는 기피 업종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모병제 아래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학력, 저소득층 사람들일 것이다. 이것은 나라를 계급구조로 양분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대 자체의 질과 사기를 떨어뜨리게 된다.

둘째, 전문 집단화된 군대는 '살인 기계화', '국가 노예화'가 될 것이다. 근대 산업사회가 냉은 현상의 하나는 전문 집단화다. 이것은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책임과 윤리를 뭉개는 구실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량살상 무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일한다고 하자. 회

사는 군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만드는 부품이 어떤 것인지 비밀에 부친다.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보람있는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만드는 부품이 사람을 학살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문 집단화가 되면서 그 일이 공동체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다. 자기 자녀가 군대에 가는 것도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자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자국 군대가 제3세계에 가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과 별 다를 것 없이 방관하게 되는 것이다. 군인들 역시 상관의 명령이 그릇된 것인지, 어떤지는 생각할 이유가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군대는 국가의 노예가 되고, 살인 기계가 될 위험이 많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나는 '병역'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현재의 징병제를 확대·개선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곧, 병역을 단순하게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킨다는 소극적 개념에서, 국가 방위를 포함한 나라의 발전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 '남녀'가 1년에서 1년6월 동안 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남녀·장애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간 사회적 의무를 지게 만듦으로써 사회를 성숙하게 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의무가 공평하게 부과될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위의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들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확대 징병제를 통해 모든 국민이 군대와 연관되어 나라의 잘못된 군대 동원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평화 유지와 군 범죄 예방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또 군대 문제로 벌어지는 각종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여성들을 군대 안 간다고 이유 취급하는 마초들과, 돈이 없어서 언제나 서러운 일을 당하는 서민들은 사라질 것이며, 고학력·부유층 역시 같은 의무를 지고 타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집총 거부를 넘어서 이러한 징병제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몇 가지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로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김강기명/대학생

[한겨레] 2003-04-28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09면 01판 1893자

[길라잡이]여자, 군대, 평화

세상 정말 참 안 변한다고 가슴을 치다가도 문득 '어머나!' 하고 눈을 등그렇게 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았던 삼풍백화점이 어느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의 기분이라고나 할까. 최근 이라크전과 관련해서 나는 또한번 그런 경험을 했다. '린치 일병 구하기' 니 뭐니 하면서 제시카 린치라는 여군이 일약 전쟁영웅으로 떠오르는 걸 보면서였다. 그래,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미국 정부와 언론의 전쟁영웅 만들기 작업이 곱지 않게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마침내 등장한 '여성 전쟁영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가부장제의 운명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전조로 읽히지 않는가?

마침 국내에서도 한 달쯤 전부터 여자와 군대에 관한 논쟁이 한쪽에서 뜨겁게 일고 있다. 한 페미니스트 잡지가 특집으로 여자와 군대의 문제를 다루면서 편집자의 글에서 '여자도 군대 보내라!'고 주장한 게 계기였다. 논쟁의 지점은 하나가 아니지만 역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부 후천성 군필자증후군을 앓고 있는 남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자도 군대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글의 필자는 '왜 안돼?'란 제스처로 짐짓 도발을 했고, 이에 반발하는 쪽에서는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은 거론도 않고 '여자도 군대 보내라'고 한 데 분개했으며, 더 나아가 여자는 군대 가기보다는 반전평화 운동가로서 안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논쟁은 1970년대 말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다. 당시 페미니스트 잡지 〈엠마〉의 편집장은 병역의무제에 반대하면서도 자유의지에 근거하는 한 여자도 군대에서 남성과 똑같은 기회를 보장받고 무기도 다룰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군대에 있는 여성도 무기를 다루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현상은 군대는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군대라는 제도는 이 사회의 위계적인 양성관계와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다. 흔히 남자는 군대생활을 거칠므로써 「진짜 사나이」가 된다고 한다. 군대를 통해 제2의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때 군대는 진짜 사나이, 곧 온전한 혹은 1등 국민을 생산하는 「정치적인 몸」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겪지 못한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2등 국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니,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 입에서 「군대도 똑같이 개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1990년대 중반,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는 「평화과정의 여성들」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는 「여성을 군대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에게나 평화과정 양쪽에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이제 군대는 남성만의 영역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징병제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병제가 거론되지만 이는 또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군대로 몰리게 되는 계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말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던 미국의 한 의원은 「자신이나 가족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많아 전쟁 지지가 늘어났다」며 다시 징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또 여와 남이 함께 군대를 만들어 나간다면 현재의 비인격적이고 마조적인 군대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 기대가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여성의 남성화, 주변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여군과 여성평화운동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문제이며, 군대 문제도 더는 여자들이 「입닥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의는 꼭 있었으면 한다. /김신명숙 계간 <이프> 편집위원·작가

[커버스토리] 2002년09월18일 제427호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적절한 월급은 사병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예비역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첫 걸음

대학가에서는 올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강력한 집단적 병역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올 초 인기가수 유승준씨의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한 병역면제 파동에서도 볼 수 있듯 병역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군대 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에 큰 고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의 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국민개병제? 빈민개병제!

현역은 괴롭다. 육군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이라는 복무기간도 길지만, 내무생활도 힘들다. 군대 좋아겼다는 이야기는 20여년 전 필자가 군복무를 할 때도 늘상 들은 이야기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대는 좋아져야 할 여지가 너무 많다. 우리 군, 특히 사병들의 복무여건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병역의무에 대한 거부감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상류층 자제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줄줄이 병역면제를 받는 현실에서 우리의 국민개병제는 허울뿐이고, 사실은 「빈민개병제」가 되었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온 지 오래다. 현역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폭발 직전이다.

우리 헌법 39조 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국방부나 병무청이 병역의무의 정당성을 내세울 때 금과옥조로 여기는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는 39조 1항뿐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39조 2항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사문화된 이 조항을 우리는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현재 상류층 자제의 병역비리로 인해 야기된 병역의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다.

1956년 2070만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에는 4700만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군대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왔으나 사병의 복무기간은 33개월에서 26개월로 고작 7개월 줄어들었다. 인구가 2.27배 늘어난 사이 군대의 규모가 일정하다면 복무기간은 14.5개월로 줄어들어야 계산이 맞다. 정부는 군복무기간을 줄여 병역의 형평성을 피하는 대신 각종 병역특례나 면제자를 양산해온 것이다. 1956년과 견줘보면 현재의 사병들은 26개월의 복무기간 중 자기 몫 14.5개월의 복무를 한 뒤, 1년 가까이 남의 몫의 군대생활을 하는 셈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의 단축과 아울러 사병들의 복무여건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들이 받는 월급이다. 월급이라 불러야 할지, 용돈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한달에 받는 돈은 평균 2만원에 못 미친다. 인정하기는 쉽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이 받는, 또는 자신이 버는 돈에 의해 존재가치가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교과서에 나오는 당위는 돈이 지배하는 현실 앞에선 무력하기 짝이 없다. 2만원이라면 하루 일당으로 666원, 8시간 근무에 1시간 야간보초를 선다고 치면 시간당 74원이다. 사병들은 사실 24시간을 다 바치고 있으니 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28원이 채 안 된다. 21년 전 필자가 이등병이 되었을 때 첫 월급이 2700원이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미국인 동료가 “음, 괜찮네”라고 말한다. 어이가 없어 쳐다보니 그 친구도 무언가 잘못됐느냐는 표정으로 “시간당 2700원이면 그다지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이럴 땐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가장 중요한 액수 문제만 빼놓으면 사병들의 월급은 아주 조건이 좋다. 필자도 이등병 시절 2700원이던 월급이 병장을 달자 4500원으로 무려 67%가 올랐다. 2년 사이에 봉급의 3분의 2가 오르는 직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임금 체불? 걱정할 필요 없다. 단 한번도 정한 날에 월급이 안 나온 적 없이 꼬박꼬박 나온다. 게다가 3개월마다 월정액의 50%씩 보너스도 거르지 않고 나온다. 정리하고 나 명예퇴직은 제발 시켜주었으면 해도 시켜주지 않는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는 월급의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해 국민경제 회복에 혁혁한(!) 기여를 하기도 했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다는 말에 한마디로 “딱 걸렸어”다.

지난해 필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만을 방문

해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대만 사병들이 우리 돈으로 4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는 점이었다. 대만은 경제규모도 우리와 비슷하고, 거대한 중국을 미군의 주둔 없이 상대하고 있어 안보여건이 우리보다 나쁘면 나빠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사병들이 26개월 동안 월급과 보너스를 꼬박 모아야 할 금액을 한달 월급으로 받고 있다니! 그 전까지는 필자도 우리 국민 거의 모두와 마찬가지로 정병제니까 사병들의 월급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여겼다.

현재 2만원도 안 되는 사병들의 월급은 월급이라 부르기가 낯간지러울 정도로 터무니없이 적다. 2000년 초 헌법재판소가 하위직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들에게 부여된 5%의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 전국의 예비역들은 놀라운 전우애를 과시해 헌법재판소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를 초토화시켰다. 당시 예비역들의 분노는 방향이 잘못됐을 뿐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군가산점이란 정부가 군복무를 마친 사병들에게 해준 유일한 배려였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징집된 사병들에게 월급을 꼭 줘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60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병장의 월급은 120환. 현재의 9급 공무원 초임에 해당하는 5급 26호봉이 360환이었으니, 병장 월급은 공무원 초임의 3분의 1이었다. 당시 준장의 월급(기본급)은 1200환으로 병장은 준장 월급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 당시 이등병(60환)과 대장(1800환)의 월급 격차는 1대 30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격차는 수백배다. 나라살림이 어려우면 자유당 때가 더 어려웠다. 그 뒤 경제성장의 과실은 다 어디로 갔나? 정말 우리 군대가 많이 좋아진 것인가? 사병들의 교육수준과 인권의식은 크게 신장했지만 상대적인 복무기간과 처우는 뒷걸음질쳐도 한참을 뒷걸음질쳤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병들은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몸으로 때운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현물조세 형태의 병역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면제자들, 특례자들, 그리고 상당수 대체복무자들은 현역보다 좋은 조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향유하며 정상적인 월급까지 받는다. 1990년대 초반 국방연구원이나 육군사관학교 논문집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2000년대가 되면 징집사병들에게도 지원병(부사관) 수준의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993년의 한 연구는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24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재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 휴가 나오면 가족에게 손 벌려야 하고, 제대 뒤 복학하거나 취업하려면 막막하기만 한 사병들에게 최소한 도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일까?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더구나 상류층의 병역비리가 연일 방송과 신문을 장식하면서 현역으로 복무했고, 복무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복무해야 할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처지에서는 징병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전혀 살릴 수 없다. 모병제를 채택하면 물론 초기에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징병제의 낭비도 생각해야 한다. 한창 학업에 정진하거나 생산활동에 종사할 나이의 청년들을 26개월간 군에 잡아두는 것은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70만에 육박하는 대군에다 300만의 예비군, 500만의 민방위를 갖고 있다. 인해전술을 쓸 게 아니라면 이런 방대한 규모를 유지할 까닭이 없다. 현대전에서 병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상식이다.

1980년부터 1995년 5월 말까지 15년 5개월 동안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이른다. 연평균 57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우리 군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5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는 셈이다. 걸프전 당시 미군쪽 사망자가 전사 148명, 사고사 121명으로 모두 269명에 지나지 않은 것에 견준다면 이 같은 손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1996년 330명, 1997년 273명, 2000년 182명 등 평균 200~300명선에 육박한다.

청년실업의 문제와도 연관

군당국이 안전사고를 줄이려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제한적인 공급이 가능한 징병제 아래서 사병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병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지급함은 '신성한 군복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현역으로 군에 복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긋지긋하게 땅을 파고, 사회에서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의미 없는 사역에 동원된 기억이 많을 것이다. 1960~70년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과거 사단장쯤 되면 백만장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병력을 관사에서 부릴 수 있었다. 만약 사병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지급되면 사병들을 무의미한 사역에 동원하는 일 따위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이는 병력의 합리적인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 특히 고졸 실업의 문제는 군대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무적인 군복무가 청년들의 실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취업하자마자 일할 만하면 군대 가야 하는 사람들을 정당한 조건에 기꺼이 채용할 고용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학력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선별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의 취업 기회도 마땅치 않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운동이 이 땅에서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방부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반발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은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그리고 이 박탈감은 너무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문제는 분노의 대상은 평생을 전과자로 살 각오를 하고 양심의 명령에 따르기로 한 병역거부자들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와 그런 제도를 강요해온 대한민국 정부가 돼야 할 것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한국현대사

[커버스토리] 2002년09월18일 제427호

정병제, 단계별로 바꿔나가자

“특정병과부터 지원병제 실시를” … 국방 전문가들이 말하는 모병제 대안

민간운동 차원에서 사병의 인권보장과 감군·감축의 일환으로 병력 수와 군복무기간을 줄일 것을 주창했다면, 90년대 들어 국방연구자들은 안보우선의 관점에서 병력수급 체계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개혁론을 내놓았다. 두 경우 모두 모병제로의 전환을 중요한 과정으로 꼽는다.

국방관련자들이 모병제 전환을 위해 내놓은 방법론은 크게 두 갈래다. “정병제·모병제를 혼합한 단계적 전환”과 “일률적 모병제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인 군사평론가 정창인씨는 단계적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사역에 동원되는 방식은 국방 전력의 커다란 낭비다.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한 특정 병과에서부터 지원병제를 실시해 병력을 줄이고 적절한 보상을 해준 다음, 점차 전 병과로 이를 넓혀야 한다. 이미 취사 등 일부 분야는 민간에서 아웃소싱을 받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은 외부 용역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모병제추진국민연대 대표 배성관씨는 “3년이든 5년이든 모병제 최종 전환시기를 못박고 전방의 군단에서부터 병력수급 수를 크게 줄여나가야 한다. 모병제의 기본 취지는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는 것이다. 징집제를 유지하며 병과별 단계적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군 수뇌부가 집단적으로 반발할 불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사회적 합의가 되면 모병제 전환을 위해 국방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거나 특별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군대 가느니 감옥 가겠다”

(병풍 확대+군 의문사 증가)×미-이라크 전쟁 위기 고조=집단적 병역 거부(?). 군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만든 가상 방정식이다. 세상 돌아가는 요지경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수 있는 공식이다. 특히 언젠가는 군대에 가야 하거나, 영장을 받고서 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에게 이 방정식은 피부에 와 닿을 수밖에 없다. 혹여 불온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라면 이 공식이 현실화하기를, 아니면 자신이 직접 실천하고픈 충동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군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 오는 10월 초 경기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하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보내고 있는 서울대 김정수씨(21-가명-전기전자공학부 3)도 요즈음 병역을 거부하고픈 충동을 종종 느낀다. 그는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병역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거부하고픈 국가의 명령일 뿐”이라면서 “소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의 아들들이 줄줄이 병역 기피의혹을 받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군에서 비명횡사하는 의문의 죽음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군대에 가고 싶겠는가”라고 말했다. 군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역을 거부하고 싶은 것이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는 얘기다.

“동포를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

한 젊은이의 현실적 푸념만은 아니다. 대학생들의 병역거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오태양씨가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한 이후 잇따라 대학생들의 공개적인 병역 거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7월 2일에는 사회운동가 유후근씨(27)가 “동포를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를 들어 병역 거부를 선언했고, 같은 달 30일 동아대생 임치윤씨(25-독문학과 3)도 “반전평화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겠다”며 같은 길을 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병역 거부 선언자가 나오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12일에는 한 대학생의 네번째 병역 거부 선언이 이어

졌고, 군 입대 통지서를 받지 않은 14명 청년의 집단적인 예비 병역 거부 선언 까지 터져나왔다. 군대를 가느니 철장 신세를 지겠다는 대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생 나동혁씨(26-수학 4)는 지난 9월 12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평화와 인권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고 당일로 예정된 군 입대를 거부했다. 공개적인 네번째 병역 거부였다. 나씨와 함께 이날 임재성(고려대)-염창근(경희대)-박종웅-이충희-김민주영-양석재(이상 서강대)-김석민-김치수-장기정-이현종(이상 서울대)-류주열(연세대)-이용석(중앙대)-이원표-장준걸-박철(이상 항공대)씨 등 14명의 대학생도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영장이 나오더라도 군에 입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혼자서 병역 문제를 고심해 오던 이들은 나씨의 병역 거부 선언을 계기로 뭉쳤고,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키겠다는 취지로 공동으로 병역 거부를 선언한 것이었다. 처음으로 이뤄진 집단적인 예비 병역 거부 선언이었다.

뿐만 아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대학생들의 국회 기습 시위도 다음날 이어졌다. 지난 9월 13일 일군의 대학생은 국회 국방위원회장실 기습 시위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 법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10여 분 만에 끝나긴 했지만 이들이 국회에서 외친 구호는 일반 대학생들의 군에 대한 현재적 인식 지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돈과 '빡'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들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고통부터 책임져라" "소중한 목숨을 죽여놓고 자살이라고 우겨대는 군대의 비민주성과 반인권성부터 청산하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두 아들 병역 비리 의혹과 군 의문사를 겨냥하면서 대학생 병역거부 선언의 취지를 알리기 위한 발언이었다.

영장 안 받은 14명 동참 첫 집단 선언

어쨌거나 군 입대 영장을 받지 않은 이들까지 병역 거부 대열에 동참하고, 국회 기습 시위를 감행할 정도로 최근 대학생들의 군에 대한 반감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조금 확대하자면 대학생들에게 병역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의 폭력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 점이 그간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일부 종교인들의 병역 거부와 최근 불붙고 있는 대학생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차이점이다.

첫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태양씨는 불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유후근씨는 조국 분단의 현실을, 나동혁씨는 반전과 평화를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웠다.

14명의 예비 병역 거부자들이 선언문을 통해 밝힌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군 문제는 성적-취업-교우 관계와 함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다.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편하게 군대를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고위층 병역 비리 사건에서 느끼는 분노와 박탈감이라는 모순을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우리는 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학 사회에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 군의 민주화, 한국 사회 군사주의 문화 척결을 위한 행동을 펼쳐 갈 것이다."

병역 적용의 둘이 공평치 못하고, 군사 문화가 일상적 파시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는 병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생들의 병역 거부 선언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학생회협의회의 강수민씨는 "사회 고위층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허원근씨를 비롯한 군 의문사의 진실이 규명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또 다른 예비 병역 거부자들이 대거 나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왜 이들은 정치적 병역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병역 거부의 이유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이다. 간단하게 다음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양심에 비춰 총을 들 수 없는 이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엄연한 폭력이라는 것.

"대체복무로 사회에 봉사하겠다"

예비 병역 거부자의 한 사람인 양석재씨는 "적에 대한 명렬한 증오심을 강요하는 정치적 주입, 이유를 불문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비민주성, 수없이 반복되는 폭력과 구타로 얼룩진 곳이 우리나라의 군대"라면서 "사회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오로지 군사훈련-군사작전 수행만으로 못박고 있는 현행 징병제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한 이들에게 '병역 기피자'의 굴레를 씌워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예비 병역 거부자인 김석민씨도 "군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명목으로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대량 살육의 기술을 집단적으로 가르치는 곳에 불과하다"며 "감옥을 가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소수자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강고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작정 군대를 가기 싫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총을 들지 않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바로 다양한 대체복무제의 고려이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국방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관계 당국으로서는 이같은 대학생들의 요구가 투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눈치다. 최돈결 병무청장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사이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속출한다면 감소 추세에 있는 현역병을 어떤 방법으로 충원하고, 유사 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국가 안보를 강조했다. 개

인의 인권에 앞서 국가의 안보가 먼저라는 국가주의적 색채를 드러낸 대목이다. 국방부는 오히려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점차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쨌거나 대학생들의 정치적 병역 거부는 군 당국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군을 신뢰할 수 없은 상황이라면 대학생들의 병역 거부는 정당할 수밖에 없다.

"양심과 신념에 따라 집총과 훈련 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은 물론 인간을 살상하는 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다. 오태양씨가 지난해 12월 17일 "신앙과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고 사회봉사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는 문제다. 오씨 사건을 계기로 34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올 2월 발족했고, 이후 병역 거부 선언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 중에 있다.

문제가 확대되면서 법원의 판단도 점차 유연화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구속과 3년형 선고를 관행처럼 지켜왔지만 오씨 사건 이후에는 불구속이나 보석,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는 빈도가 높아졌다. 선고를 내리더라도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1년 6개월 선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검찰이 오씨에 대해 청구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입법 논의도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7월 초 국회에서는 연대회의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공동주체로 대체복무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역을 보충역 등과 같은 병역의 일종으로 규정해 병역법에 근거를 두고, 대체복무요원판정 절차법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안길찬 기자 chan@kyunghyang.com